

보통상해보험 보통약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 보험계약” 은 “ 계약” , “ 보험계약자” 는 “ 계약자” , “ 보험회사” 는 “ 회사” 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 13 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 15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5 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 10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헬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8 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 9 조(후유장해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 후유장해” 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 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10 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 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 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 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 3 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11 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12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13 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3 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3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14 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 3 항 제 1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 3 항 제 2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 14 조(계약후 알릴 의무)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손해가 제 3 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 5 항 및 제 6 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 17 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 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 19 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20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 2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5 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 23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4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 25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7 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28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2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0 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1 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업무 중 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 중(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 외 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 외(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천재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8. 에도 불구하고 지진, 분화 또는 해일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 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② 제 1 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업손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 주를 한도로 휴업손해위로금을 정기적(주급)으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다음 지급률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본항에서 정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사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의 휴업손해위로금 대신 다음 지급율표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1 종에 한합니다.

- 지급율표 -

휴업손해위로금 지급액이 70,000 원인 경우의 일시금은 다음과 같으며 휴업손해위로금 지급액이 70,000 원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계산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 제거에 의한 상실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	560,000 원
한 개 이상의 지골(指骨) -----	420,000 원
(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지골(指趾骨))	

나. 관절의 완전탈골

엉덩이 -----	840,000 원
무릎(슬개골 제외) -----	420,000 원
족골(지골(趾骨) 제외) -----	420,000 원
발목 -----	420,000 원
손목 -----	378,000 원
팔꿈치 -----	280,000 원
어깨 -----	210,000 원
한 개 이상의 지골(趾骨) 또는 지골(指骨) -----	70,000 원

다. 완전골절

두개골 -----	910,000 원
대퇴부 -----	840,000 원
상박(팔꿈치와 어깨사이) -----	840,000 원
골반 -----	700,000 원
어깨뼈 -----	560,000 원
다리 -----	560,000 원
슬개골 -----	560,000 원
쇄골 -----	420,000 원
전박(손목과 팔꿈치사이) -----	420,000 원
족(지골(趾骨) 제외) -----	350,000 원
손(손가락 제외) -----	350,000 원
아래턱(치조돌기 제외) -----	210,000 원
한 개 이상의 늑골(肋骨), 지골(指骨) 또는 지골(趾骨) -----	140,000 원

③ 피보험자가 휴업손해위로금을 받는 기간 중 다시 휴업손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를 입었을지라도 회사는 휴업손해위로금을 중복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에게 발병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제 1 항의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을 매년 자동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 17 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을 체결할 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 개월 미만은 버리고 6 개월 이상은 1 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 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 시에 시작하여 24 시에 끝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 벌금 및 방어비용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리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 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 3 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 시에 시작하여 24 시에 끝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휴일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② 제 1 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 시에 시작하여 24 시에 끝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1)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별표 10】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 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중 1 인이 21 일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1 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 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II)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 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2 항 단서(【별표 10】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 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 일이상(피해자 1 인을 기준으로 함)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 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탑승중 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한 항공기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에서 「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③ 위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 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 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 ②에서 기타교통수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 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안전벨트 착용중 사망담보 특별약관(1)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망시에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이 추가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안전벨트착용시탑승중 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II)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적용특칙)

안전벨트 착용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 배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도상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 ③ 위 ①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 333 조~336 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 337 조~제 339 조에 의합니다.
- ④ 위 ①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 ④ 형법 제 340 조의 해상강도손해
- ⑤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 ⑦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신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고발생지의 금요일오후(12 시에 시작하여 24 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신주말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 1 항에 정한 신주말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금요일오후(12 시에 시작하여 24 시까지)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 시에 시작하여 24 시에 끝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자원봉사 활동 중에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 자원봉사 활동 중 ” 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 자원봉사 활동중 ” 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에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 항의 제 1 호, 제 2 호, 제 8~12 호 및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6.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 3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손해배상금과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3 항 2.의 가.~마.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제 3 항 2.의 나. 및 다.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 및 라.의 비용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 4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1.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2.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3. 제 1 항 제 4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 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10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헌혈후유증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소속된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헌혈자원봉사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헌혈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약관 제()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가족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약관 제()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를 초과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후유장해지급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② 제 1 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아래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를 초과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후유장해지급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상해

② 제 1 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 3 조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 시에 시작하여 24 시에 끝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를 초과하는 고도의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후유장해지급률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입원한 후 최고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합산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 또는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단, 제 7 조 제 1 항의 4, 5, 6은 아래 2, 3으로 대체합니다)
 2.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입원일당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또는 사고전 상태대로의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적으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 4 조(단체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용어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을 개시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기간 전 입원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하 전원이라 함)와 피보험자(보호자포함)가 보험기간 전 자의적으로 퇴원(Against Medical Advice discharge, 이하 자의적 퇴원(A.M.A. discharge)라 함)한 후 180 일 이내에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을 개시」 하는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원의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개시일로부터 180 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전원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보호자포함)가 자의적으로 퇴원(A.M.A. discharge)한 후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④ 입원 중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에 따라 타 병원에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입원 치료로 봅니다.

제 2 조 (입원의료비)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 입원의료비” 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부분 중 본인부담의료비(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투약하여 발생한 의료비 포함)와 보험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의료비(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투약하여 발생한 의료비 포함)중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입원기간중의 식대
2. 선택진료료
3. CT 진단료(단,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4. MRI 진단료(단,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5. 초음파진단료(단,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② 수익자의 고의. 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 ④ 임신, 출산, 산후기(제 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중 O00-O99)로 입원한 경우
-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요양급여) 제 3 항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다음 각목의 질환 및 이와 상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4. 단순 코골음
 5.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6.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요양급여) 제 3 항에 의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의 질환 및 이와 상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1.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3.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4.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5.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⑦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요양급여) 제 3 항에 의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예방 진료 및 이와 상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예방진료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2.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3.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4.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진료
 5.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6.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 ⑧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각종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⑨ 보험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비용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일반의약품, 보신용 투약비용,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
- ⑩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간병비, 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⑪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사고 또는 그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발생한 입원의료비 중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단, 본인부담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제 4 조(보상기준) 제 2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⑫ 피보험자의 마약, 습관성 의약품, 알콜중독, 자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 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⑬ 기타 치료목적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의료비 및 대한민국 외에서 치료하여 발생한 의료비
- ⑭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제 4 조 (보상기준)

① 회사가 지급할 피보험자 1 인당 1 회의 입원(입원의 개시일부터 퇴원일까지 계속된 입원을 말합니다)에 대한 입원의료비용은 증권에 기재된 입원의료비용(상해, 질병)당보 가입금액을 한도로 ()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단, 동일한 상해나 질병 또는 분만으로 전원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보호자포함)가 자의적으로 퇴원(A.M.A discharge)한 후 동일한 상해

나 질병 또는 분만으로 180 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된 입원으로 봅니다.

②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제 2 조(입원의료비)에서 발생하는 입원의료비 총액(이 특별약관에 더하여 추가특별약관의 체결시에는 해당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합니다)의 40% 해당액을 위 제 1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동 특별약관에 체결된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중복보험의 처리)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입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 3 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 개월 미만은 버리고 6 개월 이상은 1 년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7 조 (대표연령의 지정)

단체계약에 따른 대표연령은 피보험자가 성별(남, 여)과 피보험자구분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각각 50 인 이상인 경우 평균연령의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입원병실료차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2 조(입원의료비) 이외에도 병실료차액의 10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 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 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을 말합니다.
- ③ 보험기간 전 입원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하 전원이라 함)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보험기간 전 자의적으로 퇴원(Against Medical Advice discharge, 이하 자의적 퇴원(A.M.A. discharge)이라 함)한 후 180 일 이내에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을 개시」 하는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원의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개시일로부터 180 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전원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자의적으로 퇴원(A.M.A. discharge)한 후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제 2 조 (보상한도)

동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입원의료비 기타비급여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2 조(입원의료비) 이외에도 비급여 항목중에서 기타비급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기타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서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2 조(입원의료비)에 정한 제 1 호~제 5 호 및 입원병실료차액 이외에 소요된 입원의료비용을 말합니다.
- ③ 보험기간 전 입원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하 전원이라 함)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보험기간 전 자의적으로 퇴원(Against Medical Advice discharge, 이하 자의적 퇴원(A.M.A. discharge)이라 함)한 후 180 일 이내에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을 개시」하는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원의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개시일로부터 180 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전원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자의적으로 퇴원(A.M.A. discharge)한 후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 ⑤ 입원 중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에 따라 타 병원에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입원 치료로 봅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출산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입원의료비 한방()담보 추가특별약관 또는 입원의료비 치과()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제 1 항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제 3 조 (보상한도)

동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한방(법정본인부담,5 대비급여,기타비급여,입원병실료차액)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입원의료비 출산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도 포함), 입원의료비 기타비급여담보 추가특별약관, 입원병실료차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한방병·의원에 입원을 개시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부분중 본인부담의료비와 보험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의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 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 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을 말하며 보상비율은 입원병실료차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비율을 따릅니다.

③ 보험기간 전 입원했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하 전원이라 함)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보험기간 전 자의적으로 퇴원(Against Medical Advice discharge, 이하 자의적 퇴원(A.M.A. discharge)이라 함)한 후 180 일 이내에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을 개시」 하는 입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원의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개시일로부터 180 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전원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보호자 포함)가 자의적으로 퇴원(A.M.A. discharge)한 후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⑤ 입원 중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에 따라 타 병원에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입원 치료로 봅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제 3 항의 한방병, 의원은 제외)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침약

제 4 조 (보상한도)

동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입원의료비 기타비급여담보 추가특별약관 및 입원병실료차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시간 상해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을 한도로 입원 1 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합산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 중 상해위험담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2 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 상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7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2 항의 2.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 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연간 적용보험료가 150,000원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분할보험료를 다음 방법에 따라 정한 날짜까지 내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

(단위 : %)

납입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납입횟수													
2회납입	70						30						100
4회납입	40			30			15			15			100

② 단기계약(보험기간 1년 미만) 및 장기계약(보험기간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위에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납입최고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만료 7일 이전에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제4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갱신) ①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만료되는 날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후 매년 같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자가 자동 갱신된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납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전 계약은 그 만료일의 오후4시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① 이 보험계약에 적용한 보험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요율이 변경된 날 이후 자동 갱신되는 보험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합니다.

제 2 조(계약후 알릴의무)

-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 3 조(의료비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 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 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보상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 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 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 3 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입원일당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 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③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④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은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⑥ 제 1 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⑦ 제 1 항의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 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0. 성병
 1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2.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1. 입 원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별표 1】

장 해 분 류 표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 장애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 교정시력 ”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 한 눈이 멀었을 때 ”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 ”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 ”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 시야가 좁아진 때 ”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컷바퀴의 결손

- 1) “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컷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ㅋ, ㆁ)
 - ④ 후두음(ㅇ, ㅎ)
- 6)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 종의 어음 중 2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 종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 추상(추한 모습)장애”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 손바닥 크기 ”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cm(1/2 크기는 40 cm², 1/4 크기는 20 cm²), 6 ~ 11 세의 경우는 6×8 cm(1/2 크기는 24 cm², 1/4 크기는 12 cm²), 6 세 미만의 경우는 4×6 cm(1/2 크기는 12 cm², 1/4 크기는 6 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 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 1,2 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 팔 ” 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팔의 3 대관절 ”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0 등급(Zero) ” 인 경우
 - 나) “ 심한 장애 ”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1 등급(Trace) ” 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애 ”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 약간의 장애 ”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 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 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 다리의 3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0 등급(Zero)"인 경우
 - 나) “ 심한 장애”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 1 등급(Trace)"인 경우
 - 다) “ 뚜렷한 장애”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 약간의 장애” 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 하지(다리과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 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 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 제 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 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 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 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 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 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 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의 5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 치매 ”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 간질 ”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심한 간질 발작 ” 이라 함은 월 8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 뚜렷한 간질 발작 ” 이라 함은 월 5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 약간의 간질 발작 ” 이라 함은 월 1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중증발작 ”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 경증발작 ” 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p>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걸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